

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: 2007. 7. 30(김유자의원 외 3인)
- 나. 회 부 : 2007. 8. 27(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57호)
- 다. 상 정 : 2007. 9. 17(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(김유자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도로상에 차량과의 충돌로 야생동물 및 가축사체 등이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,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충돌방지와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함
- 「도로법」에는 도로의 공사와 유지보수 등을 규정하고, 경상남도 지방도 유지관리 규정에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수시 관찰하고 청소 상태 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
-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고방지와 사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상위 규정인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신속한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시도와 농어촌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,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듦(안 제1조)
-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의 이동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를 예방함(안 제4조제1항)
- 관리기관을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순찰 중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

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함(안 제4조 제2항)

-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의 사체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(안 제5조)
- 관리기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가축 등이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- 관리 기관을 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(안 제7조)

다. 관계법령

- 「도로법」 제24조(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)
- 「도로법시행령」 제12조의2(수선 및 유지 업무의 위임)
- 「경상남도 지방도 유지관리 규정」 제3조(정의)
- 「경상남도 지방도 유지관리 규정」 제6조(순찰)
- 「축산법」 제2조(정의)
-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2조(정의)
-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 시행령」 제34조(야생동물 보호 관련 사업)
-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2조(정의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영옥)

- 본 안건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사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, 경남도에서는 지방도에 대하여 지난 2월15일 조례를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
- 안 제4조 관리기관의 임무에 명시되어 있는 생태통로와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시행 초기에는 사체처리를 중점 시행하고 시설물 설치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동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이며,

-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수시 및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사체가 천연 기념물인지 여부 등의 구분과 정확한 처리를 위한 전문교육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거양할 수 있을 것이며,
-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
- 특히, 동일한 사체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가 있을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체를 투기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을 죽여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포상금액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
- 참고로 우리 시 도로 비율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2.2%, 지방도 1.3%, 시도 47.7%, 농어촌도로 32.5%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. 8. 2. 사천시장에게 의견 요청하여 2007. 8. 16. 회시 받아 일부를 반영하였으며, 2007. 7. 30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
-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